

## 「2024년 광명시 수출물류비 지원사업」 2차 공고

광명시와 (재)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광명시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「2024년 광명시 수출물류비」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광명시 소재 중소기업은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2024년 9월 27일

(재)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

### I

####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광명시 관내 중소기업의 정식 수출 물류비를 지원하여 수출경쟁력을 제고 하고자 함.
- 사업기간 : 공고일 ~ 연내 예산 소진시 까지
- 지원방식 : 기업에서 先 수행, 後 신청 및 지원(예산범위 내 선착순 지원)

### II

#### 지원내용

- 지원대상(전부 충족)
  - 광명시에 사업자등록 또는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 ‘제조’ 기업
  - 전년도 수출액 2,000만불 이하 기업
  - 지방세 완납 기업

#### ○ 지원내용

지원내용	- 2024년 수출신고 된 건에 대한 국내·외 운임 (할증료 등 포함) - 수출신고필증 발급비 등 운송비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제비용 포함 ※ 운송비 견적서 내 항목 지원
지원비율	- 총 소요비용의 70% 이내
지원규모	- 기업 당 연간 최대 500만원 지원
지원제외	- 출발국이 한국이 아닌 해외국가간 운송료 - 무상거래에 소요된 물류비 - 관세 및 부가세 - 창고보관비용
기 타	- 지원범위 한도 내에서 다회 신청 가능 - 매 회차별 공고 시작일(9/27) 전 비용집행이 완료된 건에 한해 지원함. - 샘플발송비 지원불가('24년부터 변경됨)

### III

### 신청기간 및 방법

○ 신청기간 : (2차) **9. 27(금) ~ 10. 16(수)**

**※ 단 예산 조기 소진시 마감 예정**

○ 신청방법 : 이지비즈([www.egbiz.or.kr](http://www.egbiz.or.kr)) 온라인 접수

○ 제출서류

- ① 지원사업 신청서 및 청렴서약서, 만족도 설문서(서식 1, 2, 3)
- ② 발송내역(서식 4)
- ③ 사업자등록증명원(2024년 발급본)
- ④ 공장등록증명(기업이 광명시에 소재하지 않을 경우 필수 제출)
- ⑤ 중소기업확인서(‘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’에서 발급)
- ⑥ 지방세 완납 증명서
- ⑦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서

(※ 1년분, 한국무역협회 or 한국무역통계정보보털 발급)

⑧ 기업통장사본

⑨ 건별 운송비 지급 확인서류(※ 전부 제출)

- 물류사 인보이스, 전자세금계산서, 이체확인증(or 카드영수증, 카드사본), 운송장
- 수출신고필증
- 선하증권(B/L)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(Air Waybill)

### IV

### 선정 및 지원

○ 선정방법 : 신청기업의 지원자격 적격여부 검토를 통해 선정 및 지원결정

○ 지원금 지급 : 지원결정 후 모집 익월 일괄 지급

**※ 지원금은 천원미만 단위 절사하여 지급함.**

○ 지원제외 대상

- 사업자등록증상 제조업이 아닌 경우
- 타 지자체 및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수출건에 대해 수출물류비 지원 받은 경우
- 허위사항으로 신청하여 적발된 경우
-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
### V

### 문의처

○ 사업담당 :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서부권역센터 구현애 과장

- 연락처 : ☎070-7116-4814 / FAX 031-432-5536 / E-mail : [haku@gbsa.or.kr](mailto:haku@gbsa.or.kr)

## VI

### 기타 유의사항

#### ○ 유의사항 안내

위법·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과원 [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]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.

- ① 위법·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
- ② 형사고발(문서의 위·변조, 사기, 업무방해, 금품·향응제공 등 위법·부당행위 수반시)
- ③ 향후 지원배제(금액과 횟수,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)
- ④ 경기도 등 유관기관 통보(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)

#### ○ 클린민원신고 안내문

(재)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최고의 청렴도를 지향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. 중소기업 지원사업 담당자가 금품·향응을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접수 불가나 반려 처리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할 때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부조리 신고창구 : 031-259-6251
- 센터 홈페이지([www.gbsa.or.kr](http://www.gbsa.or.kr)) → 클린센터 신고하기

## VII

### 참고사항

#### ○ 수출실적증명서 발급 방법 (※조회기간 : 2023. 01 ~ 12)

##### 1)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

- 회원사

\* 온라인 :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이용([webdocu.kita.net](http://webdocu.kita.net))

([www.KITA.net](http://www.KITA.net) → 회원사 → 인터넷증명서발급서비스)

자사실적조회 : [www.KITA.net](http://www.KITA.net) → 회원사 → 자사수출입실적조회

\* 오프라인 : 한국무역협회 방문(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부)

- 비회원사 : 한국무역협회 방문(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역본부)

##### 2)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

\* <http://www.trass.or.kr> 방문(사업자 회원가입 후 로그인)

→ 메인화면의 '자사수출입정보' 또는 상단 메뉴의 '자사실적정보' 클릭

→ 페이지 하단의 '온라인 실시간 발급 신청하기' 클릭

→ 기간 설정 후 '조회' 버튼 클릭

→ '증명서주문' 버튼 클릭 하여 프린트